

# 中國의 金融改革과 擔保制度

박 환 일\*

## 《目 次》

I. 머리말	III. 中國에서의 擔保附去來
II. 中國 金融 시스템의 變革	IV. 對中國 投資時에 유의할 점

## I. 머리말

中國 經濟는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해 온 개혁·개방으로 연 9%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수차에 걸쳐 금융부문의 개혁을 단행하고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sup>1)</sup> 주변국들에 ‘産業空洞化’를 야기할 정도로 외자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계획경제와 개혁 과정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 문제는 향후 경제발전의 암초가 될 수 있는 難題로 부각되고 있다. 만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난다면 금융 시스템 기능의 저하 내지 마비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중국 경제성장의 부진, 나아가 전세계 경제의 혼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금융산업은 본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中國人民銀行에 속하였으나 1978년의 개혁·개방 이후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증권업무와 보험업무로 분화·발전해온 것이다. 본고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어떠한 변혁을 거쳐왔는지 살펴보고,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抵當權을 중심으로 알아보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중국의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1) 中國은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면서 1,400여건에 달하는 관계법령의 정비를 단행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舊制度를 개혁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 법규, 정책, 관행, 절차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중국 경제의 국제화·개방화가 가속화되고 外國資本의 유입이 촉진되었다. 문준조, 「중국의 WTO 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 2001-02), 2001.10, 143~146면.

파산법제에 대하여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 진출할 때 거래하게 될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업무 면에서 어떠한 변천이 있었는지, 채권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對 中國 투자시에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상업은행들의 취급업무와 대출 및 담보관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中國을 비롯한 여러 體制轉換國을 모델로 하여 개혁·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北韓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II. 中國 金融 시스템의 變革

### 1. 中國의 金融改革

중국은 1978년 국가정책을 개혁·개방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제도도 中國人民銀行 중심의 單一金融 시스템<sup>2)</sup>을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으로 이원화한 複數金融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3)</sup>

1983년 국유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점진적으로 재정지원에서 은행대출로 교체하고, 이러한 ‘政企分離’ 및 ‘有償使用’의 원칙에 따라 1985년부터는 국가예산의 건설투자 역시 정부지출에서 대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던 기업투자는 은행의 대출로 바뀌었다. 은행대출의 재원은 주로 저축을 통해 조달하였다.

금융 시스템도 人民銀行이 수행하던 상업적 성격의 업무를 분리하여 외환업무를 전담하는 中國銀行, 이자부 대출을 취급하는 中國人民建設銀行과 상공업에 대한 대출을 전문 취급하는 中國工商銀行을 차례로 설립하였고, 농촌에서의 저축과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中國農業銀行을 다시 설립[復活]하였다. 이에 따라 中國人民銀行은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는 폐지하고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 본점 소속이었던 非銀行金融機構局 증권관리부서를 증권감독위원회 산하로 재편하는 등 증권·보험의 감독체계를 전문화하였다. 아울러 지방은행, 신탁투자공사, 금융리스회사, 보험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설립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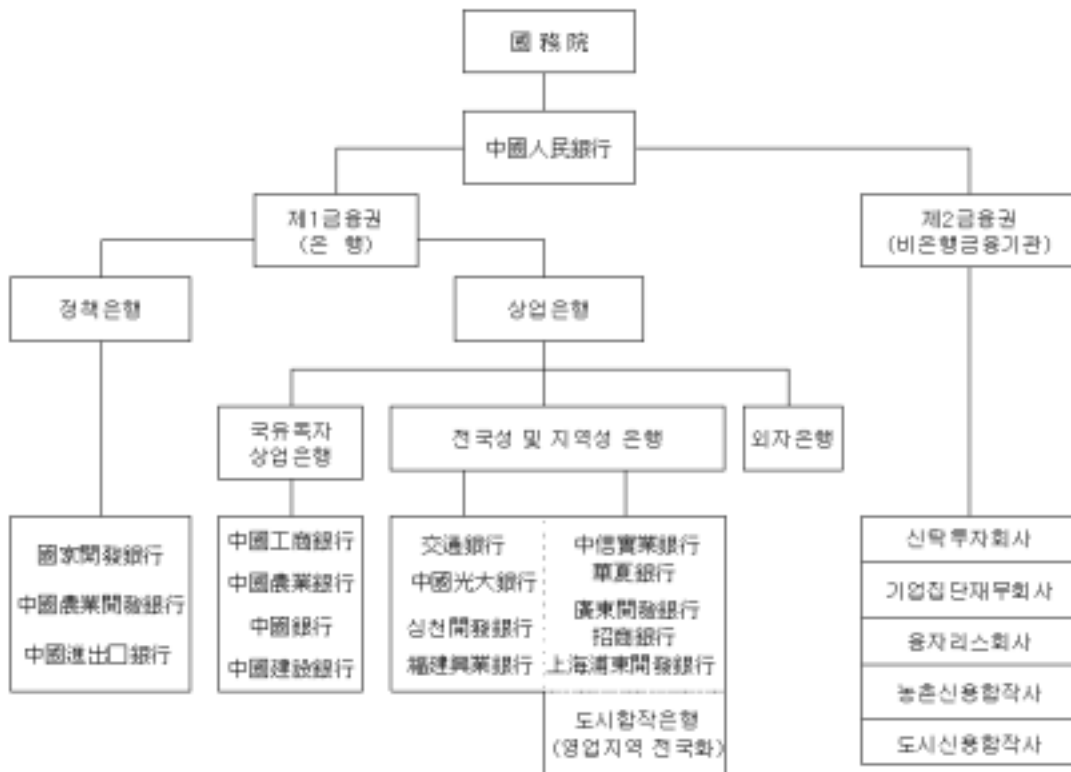
2) 중국은 계획경제 하에서는 ‘統存統貸’라 하여 정부가 일괄적으로 저축을 흡수하고 대출하는 신용체계를 유지하였다.

3) 본고에서 中國의 金融改革에 관한 설명은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중국의 부실채권처리 연구」, 한국산업은행(판매: 경제서적), 2002, 3~43면을 참조하였다.

1985년부터는 중국인민은행이 각 專業銀行에 신용대부기금 계획을 확정하고 각 전업은행은 계열에 속한 하부은행의 신용대부기금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전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든가 중국인민은행에 재대출[再貸款]을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인민은행은 전국적으로 상업어음 할인을 확대하고 전업은행에 대하여는 재할인업무를 개시하였다. 1987년 29개 도시에서 기업의 단기채권시장을 열었고, 증권회사(證券公司)를 설립하였으며 전업은행은 거액의 정기예금증서(CD)를 발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과 1991년에는 上海와 深圳에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고 北京에는 場外중개시장인 전국증권거래 자동시세 시스템(STAQ)이 개통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역시 上海와 深圳 증권거래소에서 國債先物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림 1>

中國의 改革·開放後 金融 시스템



자료: 산은조사부, 「중국의 부실채권처리 연구」, 18면에서 전재함.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경제안정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조정 정책이 시행되면서 금융부문에서도 預貸금리의 인상 등 巨視經濟安定化 정책이 공표되었다. 1993년 제14기 3中全會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결정」<sup>4)</sup>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부활과 정비, 금융 및 은행구조의 합리화, 정책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는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중심이 되고, 상업은행들은 1995년의 「商業銀行法」 시행과 함께 일반 금융업무를 활발히 취급하게 되었으며, 國家開發銀行·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中國農業發展銀行 등 정책은행이 설립되어 공공성을 띤 투융자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2. 商業銀行의 발전

중국의 기업금융은 본래 인민은행이 취급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상업적 성격의 기업금융은 專業銀行으로 이관되었다가 상업은행들이 취급하게 되었다. 1993년의 은행제도 개혁으로 종래 정책금융에 치중해온 국유은행들이 민영화되고 독립채산제가 도입되었다. 1995년에 공포된 상업은행법은 은행의 설립과 취급업무, 금융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데, 中國工商銀行, 中國銀行, 中國建設銀行, 中國農業銀行 등의 國有상업은행들은 대형 투·융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간상업은행들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交通銀行, 中國光大銀行, 中信實業銀行, 招商銀行, 華夏銀行, 中國民生銀行, 廣東발전은행, 上海포동발전은행, 深圳발전은행 등 10개의 전국적인 상업은행과 99개의 도시(城市)상업은행, 3,200개의 도시신용회사, 44천여개의 농촌신용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등의 政策銀行만으로는 자금지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4) 1993년 11월의 「中共中央關於建設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에 의하면 ① 중앙은행은 국무원의 지도 아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함 ② 전업은행을 점차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수요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 신속히 합작은행을 설립함 ③ 채권·주식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채권발행기구 설립, 채권신용평가제도, 주식의 발행과 상장규모의 확대를 추진함 ④ 은행간 자금시장 규범의 제정, 어음할인, 중국 국채매매, 공개시장업무를 확립함 ⑤ 회계제도, 법률지원 서비스, 분쟁조정기구, 계량 및 품질검증기구, 신용자문회사, 자산평가회사 등 인프라를 확충함 ⑥ 유동환율제도의 도입, 인민폐의 태환을 추진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계서, 14면 주 8 참조.

5) 1995년 상업은행법이 시행되면서 中國民生銀行과 해남경제특구에 海南發展銀行 등 민營상업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원강소속 수도철도공사의 華夏銀行은 독립된 상업은행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1996년에는 농촌금융체제가 개혁되어 농촌신용합작사와 농업은행이 정부 예속관계를 탈피하고 상업 베이스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상계서, 16면.

상업은행법에서는 여전히 상업은행도 국가산업정책에 입각하여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官治金融’이 행해질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商業銀行法에서는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들은 신탁업이나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취급할 수 없다. 상업은행들은 차입자의 자금용도, 상환능력, 변제방법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출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을 할 때에는 擔保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부채비율 및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sup>6)</sup>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상업신용이 금지되었으나, 1983년과 1985년의 유통자금 전액신용대출, 고정자산투자의 대출전환<sup>7)</sup> 등의 개혁을 통하여 차입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장기신용대출이 기업금융의 일반형식이 되었다. 1992년 이후에는 기타 용자형식,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획기적인 발전은 감독기구의 분화·발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본래 인민은행에서 관장해오던 증권·보험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증권감독위원회로 분리시키고, 巨視經濟조정수단으로 은행금리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sup>8)</sup>

증권부문에서는 과도한 거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주식의 발행과 상장을 자격심사제로 바꾸고, 상장사에 대하여는 주주가 최종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였다. 또한 상장사의 公示(disclosure)제도를 규범화하고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유지하게 하는 한편 증권중개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공시와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등 증권거래의 사기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

6) 김정환, 「중국의 금융시장과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2002.3, 50면.

7) 국유기업이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자금을 無償으로 조달하던 것을 1985년부터 행정과 기업경영 ‘政企分離’ 원칙에 따라 은행의 대출로 전환한 것을 “撥改貸”라고 부른다.

8) 금리조정에 따른 혜택은 자금을 대출하는 주체와 이를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랐다. 일반적으로 국유기업과 도시집체기업은 사적 기업보다 낮은 금리혜택을 보았으며, 농업·국방 등 우선순위의 산업 역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산은조사부, 전계서, 20면.

<표 1>

中國의 金融改革 年表

주요 개혁 조치	
1978	財政部로부터 中國人民銀行 독립
1979	중국인민건설은행 및 중국농업은행 부활,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 출범
1981	國債 발행 개시, 중국투자은행 설립
1983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중국인민보험회사 독립,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기능 수행에 관한 결정」 발표
1984	중국공상은행 설립, 중국인민은행 상업성 업무 이관, 지급준비율 제도 도입
1985	회사채·금융채 발행 개시
1986	「은행관리잠정조례」에 의해 콜시장 개설, 上海 외환조절센터 개설
1987	교통은행 부활, 신탁투자회사 및 재무회사 설립 승인
1988	국채 유통 개시
1990	上海 증권거래소 설립, 증권거래 자동호가 시스템 가동
1991	국채 신디케이트 인수업무 개시, 深圳 증권거래소 개설
1992	외국인투자자 대상 B株 발행 개시 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社會主義 市場經濟’ 채택
1993	제11월 제14기 3중전회에서 경제·금융 등 전분야를 포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결정」을 채택 중국인민은행 독립 강화, 이자율 결정에 융통성 부여, 국유은행의 상업은행화 「주식 발행 및 거래관리 잠정규정」 제정을 통한 자본시장 규제 강화
1994	二重換率制 및 외화권 사용 폐지, 중국국가개발은행·중국수출입은행·중국농업발전은행 설립, 은행간 외환매매 개시, 예산법 통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정부차입 금지
1995	「인민은행법」·「상업은행법」 제정, 공포
1996	전국적인 은행간 거래시장 개설, 공개시장 조작 실시, 미국 재정채권 매입 개시, 인민폐의 경상항목하 兌換 가능, 上海 포동지구 외국계은행 부분적 인민폐영업 허용
1997	국유상업은행 구조조정(5,300개 영업망 폐쇄), 은행과 신탁·증권의 경영상 분업화, 中國光大銀行 주식제 전환, 金融工作領導小組 설치 운영
1998	「증권법」 제정, 인민은행에서 증권관리부서를 증감회 산하로 재편, 비은행금융기관인 광둥신탁투자공사(GITIC) 부도 이후 239여개의 지방신탁투자공사를 50여개로 통합
1999	외국계 은행에 대한 인민폐 업무취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00년 말까지 177개의 영업성 기관 설립, 32개 지점에 인민폐 업무 허용
2000	國有株 매각 방안 공표, 주식발행제도의 개선
2001	WTO가입 확정, 인민폐 취급지역 추가확대, 외국계 은행 설치지역 제한을 폐지(종래 24개 주요도시→전국), 기업상장 폐지 기준 마련
2002	역외기관투자자(QFII)의 내국인 전용 A주식 및 채권 투자 허용

자료: 산은조사부, 「중국의 부실채권처리 연구」, 22~23면을 토대로 재작성함.

### 3. 現況 및 問題點

중국의 금융산업은 재정에서 분리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4대 국유상업은행의 비중은 가히 압도적이다. 금융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

<표 2>

#### 中國의 金融機關別 資産構造

(단위: 억 위안, %)

	국유상업은행	기타 상업은행	농촌신용 합작사	도시신용 합작사	재무회사
국외자산	4,397.7	1,397.4	-	-	4.6
저축자산	9,548.4	3,115.0	2,232.5	1,078.3	98.1
중앙은행채권	20.8	4.5	-	1.2	-
對政府채권	5,411.7	773.8	500.7	623.9	69.9
기타부문채권	76,061.8	8,464.0	11,161.9	4,695.1	1,432.8
非貨幣금융부문 채권	2,967.2	1,412.9	35.5	386.4	12.0
합 계	98,407.6	15,167.6	13,930.6	6,784.9	1,617.4
비 중	72.4	11.2	10.3	5.0	1.2
對GDP 비중	110.1	17.0	15.6	7.6	1.8

자료: 中國金融年鑑, 2001 [산은조사부, 전계서 47면에서 재인용함]

주: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총자산 8,083억위안), 중국수출입은행(682억), 중국농업발전은행(7,708억)의 자산규모는 GDP대비 18.4%에 달하고 있음.

현재 중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기업채무가 과다한 가운데 公·私企業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채무상환이 지연되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의 개혁 과정에서 이미 25백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6백여만명이 실직 상태에 있는 데다 매년 1천만명씩 취업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都·農間 빈부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은행 중심의 대출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큰 국유상업은행들의 경우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 과거 중국 정부가 재정자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던 국유기업의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을 은행대출로 전환함에 따라 은행이 거대한 부실대출채권을 떠안게 되었다. 더욱이 국유기업, 지방정부의 이권에 따라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의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원 승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집행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부실화가 가중되고 있다.<sup>9)</sup> 또한 각 지방, 정부기관의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였던 신탁투자회사들이 부동산·증권투자의 실패로 대거 부실화됨에 따라 이들 신탁투자회사의 구조조정 역시 금융당국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금융 부실화의 원인이 된 국유기업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출자전환 등을 통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증권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sup>10)</sup> 나아가 책임경영 원칙의 확립, 내부통제의 강화, 변호사·세무사·평가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 등 회사관련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외적인 성장은 괄목할 만하지만 이러한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유기업의 현상유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누적, 국유상업은행의 재정 파탄, 금융불안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sup>11)</sup> 중국 정부는 국유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총대출액의 1/4 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중국은 1998년에 4개의 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sup>12)</sup>를 설립했지

9) 中國工商銀行의 경우 대출총액의 2/3는 정부지시에 의한 특수대출과 규정대출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대출도 지방정부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은행 독자적으로 대출을 결정한 것은 20% 정도에 그쳤다. 산은 조사부, 전게서, 24면 주 17).

10) 중국 당국은 자본시장의 혼란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자본시장의 개방을 최대한 늦추어 왔다. 그러다가 2002년 11월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산총액 100억달러 이상의 증권사 및 은행, 보험사, 자산관리회사는 12월 1일부터 上海와 深圳의 증권거래소에서 내국인 전용 A주식 및 채권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1) 2002년 11월 15일자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부실채권 실제 가치는 장부상 달러당 5~10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실채권 가운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절반에 육박하는 2700억~4500억 달러는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예금 및 대출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개 국유상업은행은 지금도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속해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12) 중국의 4대 자산관리공사(AMC)는 스웨덴, 노르웨이의 금융위기 사례를 참고하여 주로 국유은행의 부실채권만 인수하여 정리·매각하고 있다. AMC는 등록자본 100억위안을 재정부가 출자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서 ① 채권추심, ② 인수한 부실대출로 형성된 자산의 임대, 매각, ③ 출자전환, 기업별 주식보유, ④ 자산관리 범위내의 상장 추진, 채권·주식의 위탁매매, ⑤ 금융채 발행, ⑥ 재무 및 법률자문, 자산평가, ⑦ 중국인민은행, 증권감독위원회가 허가한 다른 업무 등이다.



만 현재까지 금융부실채권의 정리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 11월에 열린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를 중시하고 2005년까지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3대 국유은행을 공개하여 부실채권 정리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 3>

中國 國有商業銀行의 不實債權 규모 추이

(단위: 억 위안,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001
대출총액 A	21,081	25,778	27,310	32,278	47,573.6	52,378.3	69,570.0
부실채권 B	4,216.2	5,155.6	8,193.0	9,683.4	14,272.0	15,713.5	17,650.0
B/A(추정)	20	20	30	30	30	30	25.4

자료: 산은조사부, 전계서 32면에서 재인용함.

4. 外國系 金融機關에 대한 規制緩和

중국 경제의 개혁·개방에 따라 외국기업이 진출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외국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WTO 가입 후에는 중국이 약속한 대로 영업지역과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를 갖기 시작한 중국 주민들이 2006년 이후 부실채권에 허덕이는 국유상업은행을 외면하고 인민폐 업무를 제한 없이 취급하게 될 외국계 은행들로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에는 중국 금융 시스템은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1994년부터 「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를 시행하였는데, 중국의 WTO 가입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크게 확대되자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新관리조례”)를 2001년 1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정,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sup>13)</sup>

新관리조례는 중국에 진출하는 모든 외자금융기구에 대하여 그 설립, 경영업무, 감독, 해산, 청산 및 벌칙 등을 규율하게 된다. 여기서 ‘외자금융기구’란 중국의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중국 국내에 설립되어 영업을 하는, ① 본점이 중국 국내에 있는 외국자본의 은

13) 胡 健芳, “中國 WTO加盟後の外資金融機構に對する法規制の動向～「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の改正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30, No.6 (2002), 789~795면.

행(獨資銀行), ② 외국은행의 중국 국내지점, ③ 외국 금융기관과 중국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경영하는 은행(合資銀行), ④ 본점이 중국 국내에 있는 외국자본의 재무회사(non-bank)(獨資財務會社), ⑤ 외국 금융기관과 중국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경영하는 재무회사(合資財務會社)를 말한다.

新관리조례에서는 外資금융기구의 설립지 제한을 철폐하고 慎重性 조건(prudential requirement)<sup>14)</sup>만 갖추면 중국 어느 곳에서나 準則主義에 입각하여 영리성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자은행이나 합자재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중국 출자자를 금융기구에 한한다는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측 출자자 스스로 중국회사 또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립자본금도 독자은행·합자은행은 3억위안(人民幣)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전이 가능한 화폐, 독자재무회사·합자재무회사는 2억위안 상당의 환전가능 화폐로 하였다. 또한 등록자본은 실제 납입되는 화폐의 자본으로 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업무범위 및 신중한 감독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의 최저한도액을 인상하고 그 가운데 위안화의 비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sup>15)</sup>

新관리조례에서는 외자금융기구의 설립에 있어서 조건 및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였다. 즉, 외국출자자의 소재국 또는 소재지구의 관계주무관청이 설립신청을 인가하고,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하는 '신중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8%를 하회해서는 아니된다. 설립절차에 있어서도 인가심사의 기한을 못 박는 등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있다. 개업심사가 완료되면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경영금융업무허가증」을 받아 工商行政管理機關에 등기를 하고 영업면허증을 받는다.

新관리조례에서는 외자금융기구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외환업무 뿐만 아니라 인민폐업무의 취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통예금, 중·장기 대출, 어음·수표의 인수 및 할인 등의 인민폐업무, 정부채·금융채 거래 주식을 제외한 외화유가증권 거래, 신용장서비스, 단기자금의 용자업무 및 카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WTO 가입조건에 따라 人民幣업무<sup>16)</sup>를 수행하는 지역범위 및 서비스 대

14) 新관리조례에 새로 규정된 '慎重性 조건'이란 ① 합리적인 법인의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 ② 착실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 ③ 건전한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④ 유효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 ⑤ 신청자의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법규에 대한 중대한 위법을 한 기록이 없을 것, ⑥ 자금세탁에 반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15) 胡 健芳, 전계논문, 790~793면.

16)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은행들의 만기 4개월~3년의 중장기 위안화 차입규모가 전체 위안화 차입액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중국내 은행영업을 중국은행들로부터의 위안화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 큰 타격이 되었다. 또한 인민은행은 2000년부터 외국계 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위안화를 자본금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sup>17)</sup> 이와 함께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자본금의 25%로 낮추고 고정자산의 비율을 소유자 권익의 40%로 제한하며, 외화예금도 중국 국내 외화총자산의 70%로 제한하고 있다. 新관리조례에서는 중국 공민을 고급간부·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罰則은 명확화하고 엄격히 정하였다.<sup>18)</sup>

### III. 中國에서의 擔保附去來

#### 1. 不實債權 발생의 요인

중국의 금융산업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복잡다기한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1997년까지 정부의 신용할당계획에 따라 국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왔는데, 1998년 신용할당 방식이 폐지된 이후에도 정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로 인하여 은행들의 독자적인 여신심사능력이 배양되지 않았으며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이어졌다. 지방정부들도 지방경제의 발전과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실패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오랜 계획경제의 관행에 익숙하여 은행채무를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인식도 부족한 형편이다.

금융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商業銀行法」, 「어음法」, 「擔保法」 등의 법률이 1990년대 중반에야 제정·공포되었으니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더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웠다. 은행은 채권자로서 여신관리규칙을 강력히 시행하지 않았고, 채무자도 악의적으로 채무상환을 지연시킴으로써 信用危機를 조장했다. 또한 의사결정단계가 복잡하고 은행의 健全性보다도 국가신용대출정책을 집행하는 公共性이 강조되는 국유상업은행 경영관리상의 문제도 부실채권의 증가에 일조하였다.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미흡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다 자본

---

규제는 시장개방으로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중국의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2002.11.28자.

17) 胡 健芳, 전계논문, 790~793면.

18) 상계논문.

19) 산은조사부, 전계서, 42면.

의 적정성, 여신한도 등에 관한 금융감독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sup>20)</sup>

## 2. 中國의 擔保制度

### 가. 擔保法の 개요

중국에서도 擔保法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sup>22)</sup>은 1995년 6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차 상무위원회(“전인대상무회”)에서 제정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 7장 96조항에 이르는 중국 담보법은 保證, 抵當權, 質權, 留置權, 保證金 등 5종류의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채무이행담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종래 실무상으로 이용되던 담보형식을 인정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및 외자도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외자도입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sup>23)</sup> 이를 계기로 중국 상업은행법은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에는 차입자의 신용을 엄격히 심사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담보법 7조).<sup>24)</sup> 국유상업은행인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및 교통은행은 이미 1992년 5월 14

20) 상계서, 36면, 43면.

21) 담보법 성립 이전에는 『中華人民共和國 民法通則』 제89조 등의 포괄적인 규정 및 각 담보물건별로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 거래가 이루어졌다. 금융기관은 독자적인 약관에 의하여 저당권부 대출을 실시하고, 사업회사도 각종 담보형식을 이용하여 貸損 리스크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實務慣行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므로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종종 불확실성이 노정되었다. 담보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듯이 자금의 유통을 원활화하고, 투자 및 상품거래의 안전을 촉진하여 채권의 실현, 즉 회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전제로 한다.

22) 중국담보법의 全文과 翻譯은 『박훤일 국제거래법포럼』 홈페이지 <<http://onepark.netian.com>> 참조.

23) 중국 당국은 금융업을 통한 외자도입보다는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合資·合作·獨資기업의 형태로 투자를 선호하는 듯하다.

24) 이와 관련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법률해석업무의 강화에 관한 결의」(關於加強法律解釋工作的決議; 전인대상무회 1981년 채택) 제2조에 의거하여 2000년 12월 8일 「중국 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담보법해석”)을 공포하고 같은 달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로 소송실무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재판활동에 있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有權解釋을 내릴 수 있고 각급 법원이 이를 따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담보법의 시행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森川伸吾, “逐條解說中國擔保法司法解釋[1]”, 國際商事法務 Vol.29, No.3 (2001), 323면.

일을 기해 일정 이하 신용등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담보부 대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금전대차, 매매, 화물운송, 도급, 위탁가공 등 경제활동 중에서 담보방식으로 채권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법에서 인정하는 보증, 저당권, 질권, 유치권, 보증금 등의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담보법 2조). 다만, 어느 나라에서나 담보물권에 관한 物權法定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실정법상으로는 擔保物權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도 그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담보물권<sup>25)</sup>의 설정은 무효이다.<sup>26)</sup> 중국에서는 물적 담보계약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sup>27)</sup>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債權的 效力은 있다고 본다.

#### 나. 抵當權<sup>28)</sup> 거래

물적 담보 중에서 저당권(mortgage: 원어는 抵押)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당해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이를 환가하거나 경매에 붙이거나 매각한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담보법 33조 1항). 이른바 非占有型 擔保權(non-possessory security right)으로서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점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재산이 토지사용권, 건물은 물론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과 기타 동산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다만 토지소유권, 농업용 토지, 학교·병원 등의 건물 및 소유권·사용권이 불명하거나 다툼이 있는 것, 압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하여도 무효이다(담보법 37조).

##### ① 저당권설정자 소유의 건물 및 기타 지상정착물

저당권설정자는 자연인, 법인 모두 될 수 있다. 소유는 단독소유, 공동소유를 불문하며, 건물<sup>29)</sup>은 주거용, 영업용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기타 지상정착물이란 축대, 立木, 彫像, 탑 등

25) 사회주의 국가의 民法에서는 制限物權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中國의 법제에서도 物權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물권 내지 담보물권의 개념은 법률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학설상으로는 비교적 널리 수용되고 있다. 상계논문 註 28, 328면.

26) 우리나라나 日本에서와 같은 양도담보는 아직 이용되고 않고 있으며 소유권유보부 매매(割賦販賣)는 종종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 春, “中國의破産手續における擔保權の處遇について(一)”, 『民商法雜誌』, 124卷 1號(2001.4.15), 52면.

27) 담보물권 중에서 約定 또는 登記를 수반하는 저당권, 질권을 가리킨다. 담보법해석 12조 참조.

28) 曾我貴志, “中國擔保法の重要問題(下)”, NBL No.591(1996.4.15) 49~54면.

29) 건조중의 건물 기타 건축물은 담보법해석 제47조에 의하면 법에 따른 인가를 취득하고 저당물

토지상의 건물 이외의 일체의 부동산을 가리킨다(담보법 92조 참조).

② 저당권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 교통수단 기타 재산

기계류는 각종 기계·기구, 교통수단은 발동기가 부착된 운송수단, 그리고 기타 재산은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움직이기 어려운 물건을 말한다. 특별히 법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없으므로 저당권설정이라는 담보형식에 적합한 동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그 적격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③ 저당권설정자가 법적으로 처분권을 갖고 있는 국유토지의 사용권, 가옥 기타 지상정착물

중국에서 도시에 속한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중국헌법 10조 1항)이고 농촌의 토지는 농촌 주민 전체에 속해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나(헌법 10조 4항), 토지사용권에 한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sup>30)</sup> 그 중에서 할당, 불하 받은 토지사용권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할당받은 토지를 임의 또는 경매로 양도한 경우 매수인은 불하금을 지급하고, 불하를 받은 것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건물 소유권과 당해 건물이 점용하는 토지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담보법 36조 1항, 2항).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 저당권을 실행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지만,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매각대금 중에서도 건물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도시택지관리법 51조, 담보법 55조 1항).

④ 저당권설정자가 법적으로 처분권을 갖고 있는 국유의 기계류, 교통수단 기타 재산

등기를 필한 때라야 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다고 본다.

30) 都市의 土地使用權을 취득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한다. ① 지방정부가 원칙적으로 무상·무기한으로 지급하는 割當(원어는 劃撥, 城市房地產管理法[이하 ‘도시택지관리법’이라 함] 22조), ②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일정 기간 유상으로 지급하는 拂下(원어는 出讓, 도시택지관리법 7조), ③ 불하 받은 토지사용권을 매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하는 讓渡(원어는 轉讓, 도시택지관리법 36조)가 있다. 이 가운데 拂下의 형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양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물권적인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택지관리법에 의하면 저당권의 설정도 허용된다(동법 47조 2항). 割當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의 허가와 양수인이 정부에 불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가 인정되고 있다(도시택지관리법 39조 1항). 저당권의 경우 할당받은 토지사용권의 경락시에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불하금을 회수하게 된다(도시택지관리법 50조, 담보법 56조). 農村의 土地使用權도 2002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2003년 3월부터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매매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형 영농이 가능해진 동시에 수많은 농민의 도시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각 기업은 그의 경영관리하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며,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 2조 2항).

⑤ 저당권설정자가 법적으로 개발위탁을 받은 미개간 산지, 수로, 구릉, 간석지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으로 위탁자가 저당권설정에 동의한 것

지방정부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산과 골짜기, 물길, 언덕, 모래언덕 등 황무지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개발자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을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이에 동의해줄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⑥ 법에 따라 저당할 수 있는 기타 재산저당권

저당권설정자는 이상의 재산을 합하여, 다시 말해서 集合物로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담보법 34조 2항). 그만큼 담보가치가 증대되므로 저당권설정자는 이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업동산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부터 시행중인 企業動產抵押物登記管理弁法[이하 '기업동산저당수정법'이라 함]에서 집합동산으로서의 기업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 피담보채권액은 저당물건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담보법 35조 1항). 그렇다면 1백만위안을 빌리면서 80만위안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애당초 무담보채권까지도 인정하는 이상 어느 채권에 대하여 담보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효력요건을 정한 게 아니며, 피담보채권액에 못 미치는 재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1)</sup> 만일 물건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重複抵當).

다. 抵當權設定契約 및 登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書面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담보법 38조). 서면에 법률상의 기재사항을 갖추어 작성하는 이상 그 방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sup>32)</sup> 담보법

31) 曾我貴志, 전계논문, 50면.

32) 저당권설정계약의 기재사항은 ① 피담보채무의 종류와 금액, ② 피담보채무의 이행기한, ③ 저당물건의 명칭, 수량, 품질, 상황, 소재지,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 ④ 담보의 범위, ⑤ 기타 당

에 정한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더라도 저당권설정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補正하면 된다(담보법 39조 2항). 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도 보증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채무 및 저당물건이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므로, 위의 기재사항은 어느 것이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시에 저당권자가 저당물건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流抵當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된다(담보법 40조).

登記는 저당권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토지사용권, 건물, 채목, 항공기, 선박, 차량, 기업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설정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담보법 41, 42조). 여기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는 物權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말하며, 債權계약으로서는 이미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계약체결시에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해 저당권 등기를 해야 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 재산별로 등기/등록기관이 달라 집합물저당의 경우에는 대상물건 별로 등기를 해야 한다. 기업동산저당에 있어서는 주된 저당물건의 소재지의 市 또는 縣 이상의 工商行政管理局이 등기기관이며(기업동산저당수정법 2조 2항) 한번의 등기로 족하다.

상기 재산 이외의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登記는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이 된다(담보법 43조). 만일 등기된 내용과 저당권설정계약의 약정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담보법해석 61조).

등기를 할 때에는 주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저당물건에 관한 권한증서 또는 이들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법 44조). 등기서류는 공개되어 있으며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담보법 45조). 공시제도를 통하여 저당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라. 抵當權의 효력과 被擔保債權의 범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저당권실행비용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이와 달리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담보법 46조). 위약금, 손해배상금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며, 이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법정이자액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이 된다.

채무이행기 도래후 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저당물건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일로부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건의 천연과실, 저당권설정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법정과실에 미친다(담보법 47조 1항). 다만,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이를 수취할 수 있는 자에게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의 확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담보법

---

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담보법 39조 1항). 여기서 피담보채무는 금전채무에 한하지 않고 작위·부작위채무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며, 채무액을 금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7조 2항).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물건에 從物이 있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만 그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담보법해석 63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담보법 50조). 저당권의 존속에 있어서 附從性이 인정되므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동시에 존재하고 채권의 소멸과 함께 소멸한다(담보법 52조).

#### 마. 根抵當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일정 기간 동안 최고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담보법 59, 60조). 이러한 根抵當(원어는 最高額抵押) 제도에서는 성립·소멸에 있어서 附從性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은행거래에 있어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고 수시로 상환하는 경우에 매번 등기를 해야 하는 등 번잡한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계속적 상품거래계약에 있어서 근저당을 인정하고(담보법 60조), 부중성의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담보법 61조), 이러한 제약은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근저당에 대하여는 이러한 근저당 특유의 조항 외에 이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담보법 62조).

### 3. 擔保權의 실행과 破産制度

#### 가. 抵當權의 실행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시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의 방법으로 저당권설정자와 합의하여 評價買受, 換價賣却, 競賣 등 어느 한 가지 私的實行 방법을 택하면 된다. 만일 채무불이행이나 저당권실행방법에 관한 다툼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담보법 53조 1항). 이중 어느 방법에 의하든지 간에 저당권을 실행한 후 대금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되며,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완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담보법 53조 2항).

評價買受는 저당물건의 가격을 정하여 저당권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단계에서는 流抵當특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후에는 채무자의 자금난을 저당권자가 이용할 위험이 없으므로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청산의무를 지우기로 하고(담보법 53조 2항) 굳이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換價賣却은 경매 이외의 보통의 매매 방법으로 환가하는 것이다. 경매에 비하여 저당물건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곳에서 경매절차가 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평가매수, 환가매각에 있어서 가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보법은 시장가격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담보법 94조).

競賣(원어는 拍賣)는 공개경쟁 매매의 방식으로 최고의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저당물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제도이다. 경매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1991년 4월에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이 적용되며, 인민법원의 관여 없이 옥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拍賣法』에 의하게 된다.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저당권 설정계약의 선후에 따라 우열을 가렸는데 종종 다툼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현행 담보법상으로 優先辨濟의 순위를 정하는 원칙은, 첫째 등기가 되어 있는 저당권은 미등기저당권에 우선하고, 둘째 등기된 저당권 사이에서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며, 셋째 미등기저당권 사이에는 계약체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넷째 등기시기 내지 계약체결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에 按分하여 정한다(담보법 54조).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사용권, 건물 등 주요 물건에 대하여는 등기가 저당권의 효력요건이므로 未登記저당권은 선후를 논할 것도 없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보법에서는 상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순위가 상승한다고 하는 순위상승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소멸에 있어서 부종성(담보법 52조)의 결과 이를 긍정할 수 있다.<sup>33)</sup>

채무자 이외의 제3자(物上保證人)의 재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당해 제3자는 당해 재산으로써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담보법 57조). 제3자는 그 범위에서 채권자를 代位하게 된다.

#### 나. 破産節次의 개요

중국에서는 이론상으로 국유기업의 破産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의 결손은 국가가 보전하게 되어 있는 데다 우선적으로 당해 기업의 폐쇄, 합병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결손이 누적되어 국가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되자 중국 정부는 1986년 12월 제6기 전인대 제18차 상무회에서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을 제정하고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sup>34)</sup> 비록 ‘철밥통’의 신화는 깨졌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

33) 曾我貴志, 전계논문, 53면.

의 잔재가 남아 있고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노동자의 실업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파산은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유기업 이외의 기업법인, 즉 집단소유제 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파산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에 의하여 처리된다.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파산,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1993년 12월 공포(1994. 7. 1 시행)된 「會社法」 제8장의 규정이 적용된다.<sup>35)</sup> 기업파산법은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개입의 정도가 크므로 시장경제의 요청에 부응하여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破産法 개정작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총 10장 193조로 된 第4次草案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36)

중국의 파산제도를 보면 국유기업에 대하여는 ‘整頓’이라고 하는 행정기관 주도의 재건형 절차, 기타 기업에 대하여는 ‘和議’라고 하는 인민법원 주도의 재건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整頓이나 和議는 당해 기업의 更生을 도모하는 절차이고, 거의 이용되지 않을 뿐더러<sup>37)</sup> 擔保權 처리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청산형 절차인 破産 절차에 있어서의 담보권의 효력을 알아보기로 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유기업은 상급 주관부문의 승낙을 얻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기업파산법 8조), 기타 기업은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99조). 파산신청이 있으면 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하고 破産原因의 소명이 있으면<sup>38)</sup> 파산절차수리결정을 하게 된다. 그 후 인민법원은 10일 이내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 통지하고 제1회 債權者集會 기일을 공고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이며, 이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집회에서 파산협정안을 가결하면 인민법원은 破産宣告를 하고 15일 이내에 破産管財班<sup>39)</sup>을 선임하여 破産財團을 관리하게 한다. 파산재단은 共益債權을 우선 변제한 후 파산

34) 金 春, 전계논문, 42면.

35) 중국 파산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은 「企業破産法」과 「民事訴訟法」인데, 국유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업파산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계논문, 45면.

36) 상계논문, 77~81면; 상세한 내용은 甯井孝一·張柏年, “中國における新破産法立法への動き”, 「早稻田大學比較法」, 31권 2호(1998), 146면 이하 참조; 개요는 鈴木康二, 「アジア諸國の倒産法・動産擔保法」, 中央經濟社, 88~92면에 잘 간추려져 있다.

37) 金 春, 전계논문, 43면.

38) 채무자의 支給不能 사실이 존재한다는 소명이며, 중국의 현행법상 債務超過는 파산원인이 아니다.

39) 인민법원은 上級주관부문, 政府재정부문 등의 관계부문[행정청] 및 전문가 중에서 複數人을 지

기업 종원원의 체불임금 및 사회보험료의 미지급분, 조세채권 미납액, 일반파산채권의 순서로 변제한다(기업파산법 37조 2항, 민사소송법 204조).

#### 다. 破産節次에 있어서 擔保權의 취급

중국의 법제에 別除權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기업도산법 제32조나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파산선고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자는 優先辦濟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기업파산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재산은 破産財團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동법 28조 2항), 破産宣告 시점에 채무자에 속하는 총재산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파산재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담보부 재산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요컨대 중국에서도 채무자의 재산 위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가진 자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別除權 비슷한 권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에 참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파산관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내에 被擔保債權을 보유하는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를 게을리 한 데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sup>41)</sup>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직접 파산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기업파산법 30조).

현실적으로 중국의 파산 실무에 있어서는 담보권이 그리 강력하게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민법원이 기업에 파산선고를 할 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담보목적물도 기업의 다른 재산과 일괄하여 매각하도록 명하고 共益費用을 공제한 매각대금에서 종업원에 대한 실업구제금을 우선변제한 후 체불임금, 사회보험료, 일반채권자의 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산에 이른 기업의 재산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을 제외하면 보잘 것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부정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

명하여 破産管財班을 구성한다(기업파산법 24조 2항).

40) 도산절차에 있어서 담보권의 취급은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유엔 산하의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담보권의 실행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점을 고려하여 2002년 12월 비엔나에서 도산법제를 연구하는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V)과 담보법제를 연구하는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VI)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UNCITRAL A/CN.9/WG.VI/WP.5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41) 金 春, 전계논문, 57면.

중국 담보법이 새로 제정된 이래 종래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온 ‘保證’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자(동법 8~10조) 더 이상 국가기관이나 공익기관이 보증을 설 수 없게 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보증 이외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남발함에 따라 財團不足의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경우에 파산기업의 재산 중에서 파산재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총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당국은 파산재단을 형성할 수 없는 ‘無產可破’의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기업의 토지사용권의 매각대금에서 종업원의 실업구제금과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sup>42)</sup> 여기서 失業救濟金이란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종업원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그 동안 적은 임금을 받아온 종업원들이 기업자본 중에 축적되어 있는 노동가치를 되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노동자 보호를 선언한 기업파산법 제4조의 규정이 담보권의 우선변제권 규정보다 항시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sup>43)</sup> 더욱이 일부 대도시의 국유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 國務院通達이 기타 지역의 國有기업과 非國有기업의 파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테면 지방정부가 담보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의 포기하도록 종용한다거나, 인민법원에서도 법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것을 기화로<sup>44)</sup> 담보권설정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담보권자의 優先辨濟權이 위협받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부실채권의 증가에 부

42) 國務院 「일부 도시에 있어서 國有企業의 파산을 시험 실시하는 문제에 관한 通達」(國發 [1994] 59號). 국무원이 1997년 3월 2일 시달한 「일부 도시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합병·파산·재취직 사업을 실시하는 문제에 관한 補充通達」(國發 [1997] 10號)에서는 일부 대도시에서 국유기업이 파산하였을 때 담보목적물인 토지사용권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실업구제금을 변제한 후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 특히 토지사용권 이외의 담보목적물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부터 순차로 변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계논문, 65면.

43) 破産法은 담보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傳統的인 見解에 대해, 담보목적물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론적 근거도 희박하고 比較法的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담보목적물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관여를 배제할 경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는 담보목적물을 관리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無產可破’의 상황에서도 파산관재인이 담보목적물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파산재단의 증식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담보목적물도 파산재단의 구성부분임을 명문화하고 이에 기하여 재단증식의 관점에서 파산관재인이 담보목적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破産管財班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立法을 필요로 한다. 상계논문, 74면.

44) 1995년의 담보권 시행 전에는 토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사용권 및 지상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無效로 한 사례, 지방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었음에도 담보법 제41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저당권 설정계약을 無效로 하는 사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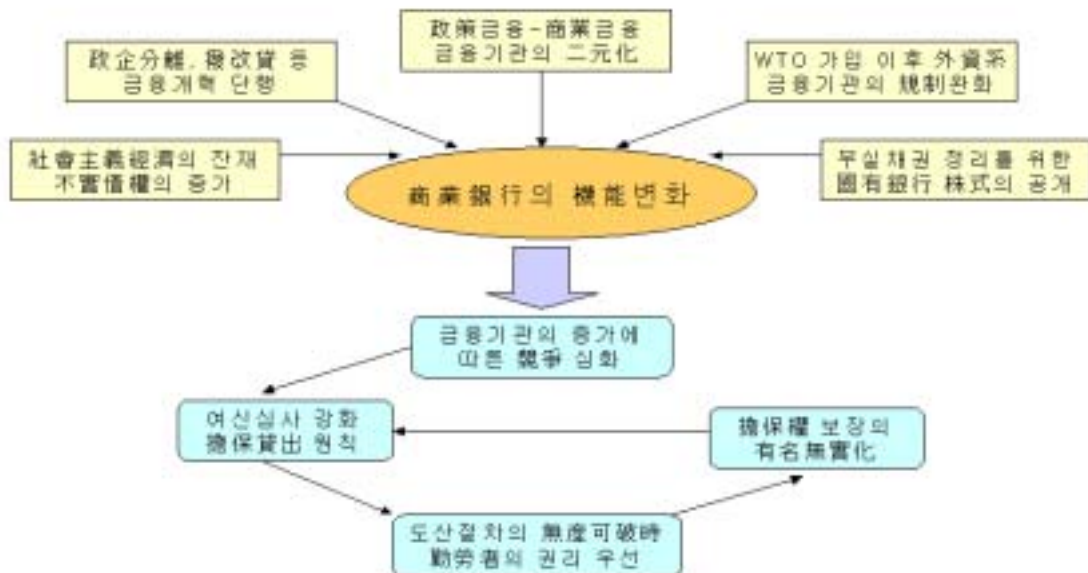
심하고 있는 은행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기업 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이러한 기업파산으로 손실이 증대된다는 것은 은행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은행들은 독립채산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파산의 증가에 대비하여 不實債權 充當金을 많이 쌓는 한편 파산기업에 대한 채권회수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天津, 武漢, 上海 등지에서는 채권은행들의 반발로 파산절차가 난항을 거듭하고, 西安 등지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대출이 극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까지 했다.<sup>45)</sup>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상시키고 있다. 예컨대 1998년 10월 廣東省의 국제투자신탁공사(CITIC)가 파산하였을 때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은 통절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비록 국유기업일 망정 중국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기왕에 행정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도 무효로 취급된다는 것, 이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채권보전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은 이제 對中國 투자시의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되었다.

<그림>

### 中國 金融시스템의 변혁과 商業銀行機能의 변화



45) 상계논문, 69면.

#### IV. 對中國 投資時에 유의할 점

중국의 금융산업은 불과 20여년의 기간 중에 업무와 조직 면에서 미증유의 변혁을 겪고, 은행의 업무관행도 천양지차로 달라졌다. 종전에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따라 국유기업에 자금을 대주던 ‘金庫지기’ 역할이 지금은 신용 리스크를 따지고 담보를 챙기는 ‘까다로운 審査者’의 역할로 탈바꿈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法制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경제적 변혁의 와중에서 법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법률적용에 일관성이 미흡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그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의 중국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니와, 본고에서 다룬 중국 금융기관의 실태와 관련하여 중국에 투자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현지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중시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토지사용권과 그 지상건물이 가장 유력한 담보물건이므로 만일 중국에서 合資投資<sup>46)</sup>를 하게 된다면 현지 합작선이 이러한 담보물건을 확실히 현물출자하고 당해 토지사용비를 납부할 수 있는지 미리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sup>47)</sup>

둘째, 중국 현지기업에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담보권을 취득할 때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로 담보권의 효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이나 공익기관의 보증은 無效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물적 담보 등 보다 강력한 채권회수·확보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sup>48)</sup>

---

46) 合資投資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7. 공포, 1990.4. 개정)과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1988.9. 공포)에 의한 외국인투자 방식으로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즉 합자투자 방식은 중국내에 중국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중외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합작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박현일, “합자투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8권(2002.8), 176면.

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투자실무가이드』(최신개정증보판), 2001, 168면. 이와 관련하여 토지관리업무는 土地管理局에서 총괄하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관리와 매매 및 임대차가격 관리는 택지관리국(房地產管理局)이 담당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48) 외국기업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중국 현지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를 취득할 때에는 「國內機構對外擔保管理弁法」(1996.10.1 시행)의 규정에 따라 國家外換管理局의 인가를 얻는 등 통상의 담보설정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담보설정에 관한 內外差別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셋째, 중국에 투자진출함에 있어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기보다 현지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경제적인 경우도 있다. 중국 당국도 기업의 파산보다는 재건을 위한 제3자(외국자본 포함)의 인수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국유기업이든 사영기업이든 외국기업이 이를 인수하는 것은 시장진입 또는 경영참여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國有株는 회사의 이익과 그 대리인(경영진)의 이익이 상반된 경우가 많아 舊경영진의 방해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중국의 회계기준이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것과 종업원 고용대책, 각급 행정관청과의 關係유지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49)</sup>

이상과 같이 중국에서 외국투자자들이 범하는 시행착오는 이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북한에도 學習效果가 크리라고 생각된다. 북한은 2002년 7월을 기해 「경제관리개선조치」<sup>50)</sup>를 실시한 데 이어 新義州행정특구와 金剛山관광특구, 開城공업지구를 속속 선포하고 있다. 중국의 사례를 본받아 북한 당국은 예외 없이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하여 장기간의 토지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폭을 확대한다면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수요의 증대에 부응하여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분리하고 증권업과 보험업도 분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51)</sup>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국유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중국이나 다른 체제전환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계에서는 담보제도의 정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擔保制度는 곤란하고 등기/등록을 전제로 담보목적물에 제한을 두지 않은 非占有型 擔保權의 창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sup>52)</sup>

49) 산은조사부, 「중국의 벤처산업」, 2002.7, 179~180면.

50) 북한이 단행한 7.1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은 ① 책임경영 강화와 인센티브 도입, ② 가족영농제 도입, ③ 물가와 임금 인상, ④ 배급제 일부 폐지, ⑤ 환율 인상 및 금융기관 이원화 등이다. 북한의 경제개혁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처럼 “傳統사회주의 → 改良사회주의 → 市場사회주의 → 市場經濟 체제전환”의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 비교해보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단계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경제개혁 어디로 가나”, 중앙일보 인터넷신문 <<http://www.joins.com>> 2002.9.18자.

51) 북한은 그 동안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은 물론 통화량 조절, 지급결제뿐만 아니라 예금수입, 기업대출, 보험 등 상업금융기관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單一銀行제도를 취하였다.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신탁은행을 설립, 二元的인 은행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중앙은행에서 맡아온 상업은행 업무를 신탁은행으로 넘겨 기관·기업에 대한 국가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신탁은행에서 대출 받아 쓰도록 자금공급체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 같은 자금공급체계의 개편은 기관·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환율과 관세를 현실화하였으므로 조만간 북한의 外換市場에서도 자유화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상계기사.

52) 지난 11월 하순 공표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보면, 공업지구(工團) 개발업자로 하여금 토



## 참고문헌

- 김정환, 「중국의 금융시장과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2002. 3.
- 문준조, 「중국의 WTO 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1-02), 2001. 10.
- 박훤일,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8권, 2002. 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투자실무가이드」(최신개정증보판), 2001.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중국의 부실채권처리 연구」, 한국산업은행, 2002. 8.
- \_\_\_\_\_, 「중국의 벤처산업」, 2002. 7.
- 胡健芳, “中國WTO加盟後の外資金融機構に對する法規制の動向～「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の改正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29 No.3, 2001.
- 森川伸吾, “逐條解説中國擔保法司法解釋[1]”, 「國際商事法務」 Vol.29 No.3, 2001.
- 金 春, “中國の破産手續におけず擔保權の處遇について(一)”, 「民商法雜誌」 124卷 1號, 2001. 4.15.
- 會我貴志, “中國擔保法の重要問題(下)”, NBL No.591, 1996.4.15.
- 甯井孝一・張柏年, “中國におけず新破産法立法への動き”, 「早稻田大學比較法」 31卷 2號, 1998.
- UNCITRAL, A/CN.9/WG.VI/WP.5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 「박훤일 국제거래법 포럼」 <<http://onepark.netian.com>>
- 중앙일보 인터넷신문, “북한 경제개혁 어디로 가나” <<http://www.joins.com>>

주 제 어 중국, 개혁·개방, 금융시스템, 부실채권, 국유상업은행, 담보법, 저당권, 파산법, 파산절차

*Key Words* China, reform, financial system, non-performing loan, state-run commercial banks, security right, mortgage, bankruptcy act, insolvent procedure

---

지이용권과 건물을 투자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동법 18조2항) 토지이용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이 가능시되고 있다. 예컨대 中國式으로 土地利用權을 한곳에 등기하게 한 다음 여기에 抵當權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더욱이 북한측은 공업지구에서는 향후 50년간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보장한다(동법 7조1항)고 약속하고 있다.

<Abstract>

## **Legal Aspects of the Market-oriented Transition of the Chinese Banking System**

*Whon-Il Park*

China has cut a conspicuous economic figure as a new member stat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njoying brisk economic growth over nine percent a year, China has undergone a series of economic and financial reforms since it adopted the reform and open door policy in the late 1970s. However, China might be trapped in a quagmire of snowballing debts and non-performing assets of banks and state-run companies.

The banking system in China, originally under one umbrella of the Central Bank of China, has been ramified into policy financing, commercial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businesses. Ever since 1983, state-run companies had to seek other banking sources than the traditional government treasury. Based upon the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enterprise" and "no more gratis" principle, the investment to public entities changed its sources from the government budget to bank borrowings. In 1993, the China Supreme Congress resolved the reform policies, including restoration of financial markets, rationalization of banking organizations, separation of commercial banking from the public sector financing.

Notwithstanding such financial reforms,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local governments, did not cease to wield their powers in lending process, and inevitably brought in increasing volume of problem loans.

The imperfect banking and financ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ontributed somewhat to such results. For example, the General Banking Act, the Bills and Notes Act, the Collateral Act were enacted in the mid-1990s. So banks could not resort to legal instruments to recover their claims. Some debtors maliciously deferred repayments to creditor banks. Also many banks were inclined to the public nature of financing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 China Collateral Act, one of the most favorite legal instruments of Chinese

creditor banks, was established in June 1995 and came into force on October 1, 1995. The Collateral Law has provisions of guarantee, mortgage, pledge, lien and deposit. One of its characteristics is that creditors are allowed to enforce their claims by means of purchase after evaluation, public power sale or auction in consultation with debtors. Of course, creditors are entitled to file suits with the people's court. In any case, the proceeds after redeeming creditors' claims should go to debtors. If there remains deficiency, debtors shall repay the whole.

Though one cannot find the legal term of right of separation, bankruptcy creditors with proper collaterals may recover their claims preferentially to any other general creditors. As a matter of law, the Company Bankruptcy Act provides for that any encumbered assets subject to such security right shall not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But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debtor company has not sufficient properties to satisfy unemployment benefits for employees, unpaid wages and social insurance policies, the bankruptcy court would not allow preferential payment to the creditors from the proceeds. It is one of transition phenomena from the socialist country to the capitalist one, undermining the legal stability and transparency.

Therefore, would-be investors in China should bear in mind the followings:

First, the commercial banks has paid a great attention to the credibility of borrowers and put applicant-borrowers into a harsh credit review process.

Second, creditors cannot fully enforce their security rights as provided in pertinent laws owing to the court judges inclined to employee claimants. Under the Collateral Act, the government or non-profit organizations are not allowed to stand as a guarantor.

Third, foreign investors should be prepared for any limitation to new entry or management participation in Chinese companies, levied by the government or the market. One should be careful to invest in the State-held shar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evious management. Chinese accounting system is quite different from the global standards. The top-priority must be the employment issue or good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officials.

Such lessons should be learned in North Korea which has apparently followed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